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윤기섭 의원 외 27명

나. 의안번호 : 제1847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7.

라. 회부일자 : 2024. 5. 30.

2. 제안사유

○ 공공자전거“따릉이”의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출·퇴근 시간대 자전거 쏠림현상 발생하고 있으나 배송인력 충원을 통한 인위적 재배치는 운영수지 관점에서 배송인력 무한정 확대 불가, 업무 효율에도 한계 존재함

○ 재배치 문제해결은 부분적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식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

○ 과다·과소 대여소에서 따릉이 대여·반납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시민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화가 필요

3. 주요내용

가.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5조제3항)

나.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상을 규정함(안 제15조제3항 제1부터3호)

다. 시장이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5조제4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　　간 : 2024. 6. 4. ~ 2024. 6. 8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[1)]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(별도의견 없음)

1) 보행자전거과-8235호(2024.6.11.) “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”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○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시장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“지하철·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”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‘공공자전거 대여소 간 자전거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자’와 ‘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’를 인센티브 제공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서울시는 2019년부터 공공자전거(이하 “따릉이”) 이용률 제고와 승용차이용 억제를 위해 대중교통수단과 환승하는 공공자전거 정기권 이용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 인센티브를 제공[2]하고 있으며 정기권 총 이용자 중 약 3~5% 이용자가

2) 보행자전거과-13625(2015.10.14.)호 “서울자전거 대중교통 환승정보 연계 협약 체결보고”

연간 약 30백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음

※ 따릉이-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내역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
정기권이용건수	7,935천건	10,701천건	14,302천건
적립건수	384천건	426천건	468천건
적립금액	38.4백만원	42.6백만원	46.8백만원
실사용금액주)	27백만원	30백만원	33백만원
적립률	4.8%	3.9%	3.3%

주) 실 사용금액 : 적립금액 중 이용권 구매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

○ 또한,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, 주말 오후 등 따릉이 이용수요가 높은 자전거 대여소의 혼잡완화를 위한 '따릉이 시민참여 재배치 시범사업('23.7월~)[3]' 시행을 통해 따릉이 반납 편의 제공, 보행불편 해소, 재배치 요원 운영비(159백만원)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확대 시행을 계획중에 있음

○ 동 조례개정을 통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확대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의 이용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- 적립 대상 : 1년 정기권 이용자 중 버스, 지하철 30분 이내 환승자
- 적립 내용 : 1회 100원, 1일 최대 200원, 1년 최대 15,000원 적립 가능

3) 보행자전거과-544(2024.1.9)호 "따릉이 시민참여 재배치 시범사업 결과보고"

○ 안 제15조제4항은 동조 제3항에 따라 인센티브제도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된다 할 것임